

# 2024년도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12.(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성주(분과위원장), 김정숙, 안효질, 손수호,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1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건 819건(안건번호 제2024-10828호~1164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10828호~10843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 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24-10844호~10846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24-10847호~10856호는 ★★★ 블로그, 카페 및 ◇◇◇◇◇◇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이 중 안건번호 제2024-10851호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시물이 아니며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4-10847호~10850호, 제2024-10852호~10856호는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4-10857호~11646호 게시물 1,269건은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4-1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성주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심의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306건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10828호~1084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중고거래 사이트는 ★★★★★, ☆☆☆☆ 이외에도 많이 있을텐데 이 두 곳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인가?
- 김준근 선임: 현재 두 곳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수의 안전이 상정되고 있으며 ●●●●의 경우 상대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숫자가 적어 안전도 적음.
- D 위원: PDF 파일 자체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인가?
- 김준근 선임: PDF 파일은 업로드되어 있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메일로 판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D 위원: 그렇다면 복제물 자체는 아니고 정보로 보아야 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10828호~1084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0828호~1084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10844호~1084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뮤지컬 판매·교환 글도 ‘저작권 침해 정보’인데 이는 불법복제물의 차단과 관련해서 원래 헌법에 있던 것을 개수했다고 볼 수 있음. ‘저작권 침해 정보’라는 문언의 입법취지는 본래 토렌트 파일, URL 등 위치 정보를 가리켰던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혹은 권리 침해를 유인하는 정보를 가리키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매우 넓은 범위로 해석되고 있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행정행위를 하는 바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해석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 조문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적어도 보호원 내부의 심의 관련 규정을 각 저작권 침해 정보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음.
- A 위원: 우리가 법령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조직으로서 법령이나 내부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음.
- D 위원: 그러함. 단순한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시물 등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향후 심의에 도움이 될 것임.
- A 위원: D 위원님의 의견과 관련하여 향후 전체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올

려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기준과 개념을 우리 스스로 명료하게 해서 안정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둘 필요가 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4-10844호~1084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10844호~1084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10847호~10856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카페 및 ◇◇◇◇◇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이 중 안건번호 제2024-10851호는 원저작물이 일본에서만 유통 중인 앱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원저작물이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수입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잠재적 시장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안건번호 제2024-10851호에 게시된 작품은 일본에서 유료로 서비스

되고 있는가?

- 박현주 전문위원: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유료 앱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으며, 해당 앱은 지역 제한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입이 어려움.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4-10851호 게시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박현주 전문위원: 그러함. 팬 번역으로 추정됨.
- D 위원: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한 사안도 아니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불법복제물 등이 합법시장에 미칠 영향 등도 심의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임. 그런데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안의 원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지 않는 저작물임.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블로그를 살펴보면 다른 불법복제 영상물이 많이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중심이 아닌 이를테면 심의대상 블로그의 계정에 대해서 심의하는 경우가 있는가?
- 박현주 전문위원: 그러한 사례는 없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10847호~10856호 중 안전번호 제2

024-10851호는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  
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10847호~10856호 중 안건번호  
제2024-10851호는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  
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  
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10857호~1164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  
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  
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  
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  
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헤일로 시즌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11347호(‘헤일로 시  
즌2’)는 2024.02.08. 공개한 해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10포인트에 판매중임.

(‘잔느의 심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11407호(‘잔느의 심  
판’)는 2024.01.12 ~ 2024.03.08. 방영한 일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60포인트에 판  
매중임.

(‘스마트폰 너머의 그 녀석’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11529  
호(‘스마트폰 너머의 그 녀석’)는 2023.09.01. 공개한 일본 만화로 웹하드에서 130  
포인트에 판매중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4-10857호~1164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제2024-10857호~1164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10828호~10843호(순번 1번~16번), 제2024-10844호~10846호(순번 17번~19번), 제2024-10845호~10850호(순번 20번~23번) 및 제2024-10852호~10856호(순번 25번~29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10851호(순번 24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10857호~11646호(순번 30번~819번)는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o 김성주 분과위원장이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19.

분과위원장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안효질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